#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08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윤호중·문진석・황정아

윤종군 • 홍기원 • 이기헌

조승래 • 이병진 • 정성호

한민수 · 조계원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서 현행 공제제도로는 저출생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공제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민간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한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하고, 자녀세액 공제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며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을 인상하

며,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의 부 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근로자 및 종교관련종사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 체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6) 신설).
-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고 한도액을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2조제4항).
- 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장기주택저당 차입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 로 상향함(안 제52조제5항).
- 라. 8세 이상의 공제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1명당 소득세 공제액을 20만원씩 인상 함(안 제59조의2제1항).
- 마.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59조의4제3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머목 중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를 "6세"로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아목 4) 중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를 "6세"로 하고, 같은 목에 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종교단체 로부터 받는 금액

제52조제4항 본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 중 "800만원"을 "1천6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호 외의부분 중 "800만원"을 "1천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1천800만원"을 "3천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6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하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을

"손자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5만원"을 "3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5만원"을 "7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75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 및 같은 조 제5호 아목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제3조(특별소득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 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u>.</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3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가. ~ 러. (생 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머. <u>6세</u>
<u>출산이나 6세</u>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	
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버. ~ 저. (생 략)	버. ~ 저.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5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	◊}

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

- 1) ~ 3) (생 략)
-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 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 (생략)

자. (생 략)

<신 설>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제52 (생 략) (현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및「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1) ~ 3) (현행과 같음)
4) 6세
1/ <u>U   </u>
5) (현행과 같음)
<ul><li>5) (현행과 같음)</li><li>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li></ul>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런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런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자. (현행과 같음)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보는 금액         자. (현행과 같음)         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런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자. (현행과 같음)  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보는 금액         자. (현행과 같음)         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런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자. (현행과 같음)  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런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자. (현행과 같음)  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런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자. (현행과 같음)  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런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자. (현행과 같음)  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 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 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 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 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 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 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

<u>100분의 60</u>
<u>800</u> 만원
<u>800만원</u>

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 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 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 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 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 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 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 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 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 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

•
5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 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의 합계액이 연 <u>800만원(</u>차입 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 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 5. (생략)
-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연 <u>800만원</u> 대신 그 해 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 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

1천600만원
1. ~ 5. (현행과 같음)
<b>6</b>
1천600만원
1

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 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 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 천800만원
-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 ⑦ ~ ⑪ (생 략)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del>2</del> ] ⊔ <b>r</b> 0]
<u>4천만원</u>
2
۷.
<u>3천600만원</u>
3
J.
<u>1천200만원</u>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u>손자녀</u>
<u> </u>

- 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 2명인 경우: 연 <u>35만원</u>
- 3. 3명 이상인 경우: 연 <u>35만원</u>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을 합한 금액
- ② ~ ④ (생 략)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 3. (생 략)

·
135만원
 275만원
 3 <u>75</u> 만원
<u>50만원</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100</u>
분의 30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① (생 략)

④ ~ ① (현행과 같음)